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70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서왕진 · 강경숙 · 장철민
김준형 · 신장식 · 김정호
정춘생 · 황운하 · 김선민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으로서 그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금융의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이 그 사업연도에 창출한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은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창출능력을 초과하는 배당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 자본의 단기간 유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 신설).
- 나. 투자대상기업의 정의를 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의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 다. 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6조제47호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14제6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 다만,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446조제47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⑤ (생 략)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 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 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 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 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 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 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도 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 다만,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5. (생략)

③·④ (생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투자대상기업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

-----.

1. ~ 46의2. (생 략)	1. ~ 46의2. (현행과 같음)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 여 같은 항 <u>제1호부터 제3호</u> <u>까지</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7. ----- ----- <u>제1호부터 제4호</u> <u>까지</u> ----- -----
48. ~ 64. (생 략)	48. ~ 64. (현행과 같음)